

[붙임 4]

법인카드 모니터링 주요 점검 사항

구분	주요점검 사 항	점검사항 상세설명
법인카드 분야	목적외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적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공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
	불법 현금화(카드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실제거래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을 현금화 - 유가증권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
	편법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업소의 이용대금을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편법사용 -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유흥업종을 사용제한업종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클린카드 취지 훼손
	기타 편법 회계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 사용한 후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사용대금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 -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는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달리 개인카드로 반복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 - 법인카드로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처럼 분할 결제